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64 호 2020. 11. 26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219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사항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22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223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..... 4

안 내	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-219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	허가 번호	피허가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허가기간	점용목적	비 고
		성 명	주 소					
'20.11.23.	제2020 -12호	장윤준	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722	울산광역시 복구 동해안로 1722	18.26	2020.11.23. ~ 2025.11.22.	활어도소매업 운영	조건부 허 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-220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-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명촌지구 21B 2-1L(진장동) 외 3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90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11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4길 8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동 진장명촌지구 21B 2-1L	2020-11-26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	동대1길 6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273-9	2020-11-26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	아름1길 42-5	울산광역시 북구	어물동 82-3	2020-11-26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	아름1길 42-5	울산광역시 북구	어물동82-5	2020-11-26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223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변경사유
어물동 82	아름1길 42-3	2020. 11. 26.	지적분할로 인한 재부여
	아름1길 52-7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90)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0. 11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